

귀하의 권리 알기

직장에서의 권리

OFCCP는 직장에서의 차별로부터

귀하를 보호합니다.

1. 고용 차별이란 무엇입니까?

고용 차별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단지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성적 지향, 성 정체성, 국가 출신, 장애 또는 보호받는 재향군인으로서의 지위 때문에 지원자나 직원을 적대적으로 대우하는 경우에 존재합니다. 고용주가 직원이나 구직자에게 임금에 대해 논의, 공개 또는 문의하는 것에 대해 징계, 해고 또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 차별은 단일 개인 또는 그룹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2. 나의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귀하께서는 차별이 없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갖습니다.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성적 지향, 성 정체성, 국적, 장애 또는 보호받는 재향군인 신분 때문에 고용 거부, 괴롭힘, 강등, 해고, 급여 감소 또는 적대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귀하께서는 또한 귀하의 급여, 동료들의 급여, 그리고 구직자에게 제공되는 급여에 대해 토론, 공개 또는 문의할 권리를 갖습니다.

3. OFCCP는 고용 차별법을 시행하나요?

네. OFCCP는 행정명령 11246호, 재활법 503조, 베트남전 참전용사 재정비 지원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서는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기업이 위에 나열된 보호 대상자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직원과 구직자를 차별하는 행위는 전반적으로 불법인 것으로 봅니다. 고용인이나 구직자들이 그들의 임금에 대하여 묻고, 논의하고, 공개하는 것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4. OFCCP는 누구를 보호합니까?

OFCCP는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회사의 직원 및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여기에는 은행, 정보기술 회사, 육류 포장 공장, 소매점, 제조 공장, 회계 회사, 건설 회사 등의 직원이 포함됩니다.

5. 내가 차별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차별은 많은 형태를 취할 수 있고 꼭 의도적인 것들만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지원자나 고용인을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적대적으로 대할 때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국가 출신, 장애 또는 보호받는 재향군인으로서의 지위를 근거로 다르게 대우하는 행위가 있을 시 **차별적 대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불이익한 결과는 고용주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책이나 관행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 성별, 인종 또는 민족 집단, 장애인 개인 또는 기타 보호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합니다.

6. 불법 고용 차별의 예는 무엇입니까?

고용 차별의 몇 가지 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히스패닉계 직원들만 특정 작업 영역으로 할당하는 행위,
- 같은 일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불받는 것,
- 고유한 역량을 갖고 있는 직원을 이따금씩 혹은 한 번 정도만 놀리는 것을 넘어서 괴롭히는 행위,
- 성별 또는 인종에 따라 특정 직원만을 승진시키는 행위,
-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수학 시험이나 리프팅 요건과 같은 시험을 요구하여 특정 그룹의 지원자를 걸러내는 행위,
- 출산 후 회복 중인 여직원에게 유급병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인 직원에게는 유급병가를 허용하는 행위,
- 동료와 급여에 대해 논의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행위.



7. 고용주가 저를 차별했다고 믿는다면 저는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취업이나 입사지원 등에서 귀하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성적 지향, 성 정체성, 국적 출신, 장애, 보호받는 재향군인으로서의 지위, 또는 귀하의 급여나 다른 사람들의 급여에 대해 묻거나 논의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귀하께서는 OFCCP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 고용주가 연방 하도급 업자 또는 하도급 업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8. OFCCP에 어떻게 불만을 제기합니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차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OFCCP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양식 작성 및 제출
- OFCCP 사무소에서 직접 양식 작성 또는
- 이러한 차별이 발생한 장소의 관할 OFCCP 지역 사무소로 작성된 양식을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냅니다.

이 양식은 <http://www.dol.gov/ofccp/regs/compliance/pdf/pdfstart.htm> 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모든 OFCCP 사무소에서 종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사무실을 찾으려면, <http://www.dol.gov/ofccp/contacts/ofnation2.htm> 에 접속하여

OFCCP 사무실의 온라인 목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다 작성하고 나서는 꼭 서명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OFCCP는 귀하의 불만 사항을 접수하기는 하나 OFCCP 조사관이 추후 면담 과정에서 양식에 서명을 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어, 불만 제기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인종·색깔·종교·성별·성향·성정체성·국적출신 등에 따른 차별을 주장하는 민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별이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임금에 대해 논의, 공개 또는 문의하는 것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불만에도 동일한 180일 기간이 적용됩니다. 보호받는 재향군인의 신분이나 장애에 따른 차별을 주장하는 민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차별이 제기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9. 내가 불만을 제기했다는 것을 빌미로 고용주가 나를 해고하거나 좌천시키거나 적대적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요. 고용주가 직원이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참여한 것을 빌미로 이에 대해 보복 행위를 일삼는 것은 불법입니다. OFCCP는 규정을 통해 귀하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괴롭힘, 협박, 위협, 강요 또는 보복의 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귀하를 보호합니다.

10. OFCCP와 평등 고용 추진 위원회(EEOC)에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네, 만약 귀하께서 OFCCP와 EEOC에 모두 신고하게 될 경우, 귀하의 불만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OFCCP와 EEOC가 귀하의 불만을 조사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OFCCP는 일반적으로 직원이거나 구직자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연방 하청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불만 사항을 보관합니다. OFCCP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장애 또는 보호 퇴역 군인 신분에 따른 차별을 주장하는 연방 하청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불만을 보관합니다. 일반적으로, OFCCP는 연방 하청업체를 상대로 급여에 대해 질문하거나 논의하거나 공개한 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고 제기된 불만을 보관합니다.

11. 만약 내가 고용 차별의 피해자였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차별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귀하께서 받아 마땅한 지위나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구제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고용, 승진, 복직 또는 업무의 재할당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밀린 급여, 초기 급여, 임금 인상 또는 이러한 구제책을 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OFCCP가 연방 하청업체 또는 하도급자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OFCCP는 회사를 향후 연방 계약 대상이 되지 못하게끔 금하거나 제외시키거나 회사의 현재 계약이 취소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미국 노동부 연방
계약 준수 프로그램 사무소
200 Constitution Avenue, NW
Washington, D.C. 20210
1-800-397-6251
전보(TTY): 1-877-889-5627
www.dol.gov/ofccp

이 팩트 시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본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실제 법률 및 규정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